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성백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4년 11월 20일

발 의 자 : 성 백 진 의원

찬 성 자 : 김경자, 김영한, 김진철, 김태수,
김혜련, 김희걸, 맹진영, 장우윤,
유동균, 이승로, 김기대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하고 “동시설”을 “그 시설”로 하고 “미혼모·부자”를 “미혼모자·미혼부자”로 하고 “수탁자”를 “위탁받은 자”로 하며 “임면”을 “임명 또는 해임”으로 함. (안 제2조, 제4조, 제10조,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 중 “동시설”을 “그 시설”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제5호 중 “미혼모·부자의”를 “미혼모자·미혼부자의”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수탁자가”를 “위탁받은 자가”로 하고 “임면하며”를 “임명 또는 해임하며”로 하고 “임면한”을 “임명 또는 해임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----- -----.
제4조(지원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<u>동시</u> <u>시설</u> 을 이용하는 자	제4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그 시</u> <u>시설</u> 을 -----
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~4. (생략) 5. <u>미혼모·부자의</u>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	제10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미혼모자·미혼부자의</u> ----- -----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<u>수탁자가</u> 시장의 승인을 얻어 <u>임면하며</u>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<u>임면한</u>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.	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위탁받은 자가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해임하며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해임한</u> ----- -----.